

「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」(개정) 개정요약서

1. 행정규칙명

- 「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」(관세청 훈령 제2302호, 2024. 1. 1.)

2. 개정사유

- '23년 국정감사·감사원감사 지적사항, 관세법령 개정사항, 기존 지침 정비 및 훈령 반영, 심사실무자 개정 수요 등을 반영

3. 주요 개정내용

- 관세조사 정의 신설(관세법 제2조) 등 법적용어로의 용어 정비 및 근거 법령 조항 명시로 훈령 내용의 명료화

- 법적용어: '기업심사'를 '관세조사'로, '심사'를 '조사'로 일괄 정비
- 정의 조항에 근거 법령 조항 명시(제2조)

- 관세조사 수행 주체별 역할 구체·명료화(제5조~제5-1조)

- 「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(제5조제5항, 제12조제16항)에 따른 기업심사과와 세관 심사부서의 역할 구체·명료화
- 고액·불복 예상건 등 본청의 지휘·감독 강화로 과세품질 제고

- '23년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지적사항 반영

- 감사원 중지기간 중 과세자료 제출 요청 원칙적 금지 조항 신설(제36조)
- 국정감사 관세조사 결과에 따른 체납방지 조치 조항 신설(제53조의2)

- 관세조사 업무 지침을 훈령으로 정비

- 특수관계 사전심사 승인업체의 관세조사 절차 반영(제28조의2)
- 관세조사 등 실무검토회의 및 처분검토회의 구성·운영절차·결과 통보 등 관련 조항 훈령 반영(신설, 제43조의2, 제50조~제52조)

- 관세조사 결과 보고 시 특수관계 거래에 대해 수집한 정보 포함(제53조)

□ 심사국 내 타 심사업무와의 관계 정비

- “농수산물 사전세액심사”의 관할세관 정비(제5조)
- “특수관계 사전심사” 및 “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” 등 다른 업무와 관세조사 간의 관계 정립(제28조의2~제28조의3)

□ 업무효율화 등 실무자들의 개정 수요 반영

- 실제 관세조사 소요기간을 반영하여 자료제출 기간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다국적기업의 관세조사 기간 연장(제12조)
- 관세조사 연기 및 중지 사유 추가(제29조, 제36조)
- ¹⁾별표 제1호, 별지 ²⁾제9호·³⁾제21호·⁴⁾제25호·⁵⁾제29호 서식 개정
 - 1) “기업심사 표준 준비자료 목록표” 중 업체현황에 따라 필요 자료만 선별 요청 및 품목분류 관련 준비자료 추가
 - 2) “관세조사 대리인 위임장”을 1인 1부 작성서식 외의 다수용 위임장 서식 마련
 - 3) “처분검토회의 회부서” 양식을 결과보고서 양식과 일치시켜 업무효율 도모
 - 4) “결과보고서”에 대리관세사 표기토록 변경
 - 5) “심사자료 제출요구서”에 제출기한 60일은 동일자료 시 합산 계산 명기(소송 결과)

□ 보안·책임성 강화를 위한 “법인심사 운영심의 위원회” 정비(제18조)

4.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: 별첨 참조

5. 시행일자: 2024. 1. 1.